

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 반환 기준 '회차 단위' 해석 지침

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[별표3] 개정 내용

- 수업이 '회차'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

□ 회차 단위 구성

- 수업이 주1회·주3회 등으로 구성되거나, '10회차'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, 총 수업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(해석 예시① 참조)
- ※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,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 포함

□ 학습비 반환 실례

① 학습비 반환 기준

<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> (해석 예시② 참조)

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-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/3이상인 경우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-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인 경우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-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미만인 경우 : 반환하지 않음

<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> (해석 예시③ 참조)

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- 수업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'달'의 반환대상 학습비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*
- *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: (나머지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
② 기타

-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
- 10원 미만은 절사함

□ 적용 시점

- 본 지침은 '24년 4월 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에 대해 적용

□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

① 학습비 징수기간: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

- 1개월 이내: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
- 1개월 초과: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

② 1개월 산정 기준

- 민법 제160조(역에 의한 계산)를 적용

※ [민법 제160조]

- ①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(曆)에 의하여 계산한다.
- ②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-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
-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일수를 계산(역에 의한 계산은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될 수 있음)
- ※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(日)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. 예를 들어,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임

※ 해석 예시

① 회차 단위 구성

- 수업기간이 3월 1일~6월 30일(16주, 주3회)
- ①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, 보강x⇒ 총수업회차 : 45회
- ②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, 보강o⇒ 총수업회차 : 48회

② 학습비 반환 실례(1개월 이하)

총수업회차 12회(3.1~3.30.), 학습비 10만원

- ① 3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(잔여 회차 : 9회)
 -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/3이상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↳ 100,000원 x 2/3 = 66,660원 반환
- ② 5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(잔여 회차 : 7회)
 -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↳ 100,000원 x 1/2 = 50,000원 반환
- ③ 7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(잔여 회차 : 5회)
 -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미만 :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않음

③ 학습비 반환 실례(1개월 초과)

총수업회차 48회(3.1.~6.30. 월12회), 학습비 40만원

-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: (해당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-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: (나머지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
① 3월 학습 포기

- ※ 3월 학습비 = (12회/48회) x 400,000원 = 100,000원
- ※ 나머지 달(4,5,6월)의 학습비 = (36회/48회) x 400,000원 = 300,000원

-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2/3이상 : 3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☞ (100,000원 x 2/3) + 300,000원 = 366,660원 반환
-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 : 3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☞ (100,000원 x 1/2) + 300,000원 = 350,000원 반환
-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/2미만 :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않음 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☞ 300,000원 반환

② 4월 학습 포기(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않음)

- ※ 4월 학습비 = (12회/48회) x 400,000원 = 100,000원
- ※ 나머지 달(5,6월)의 학습비 = (24회/48회) x 400,000원 = 200,000원

-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2/3이상 : 4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☞ (100,000원 x 2/3) + 200,000원 = 266,660원 반환
-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 : 4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☞ (100,000원 x 1/2) + 200,000원 = 250,000원 반환
-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/2미만 : 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않음 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☞ 200,000원 반환